

베트남 개정 노동허가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베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 관련 기존 제152호 시행령(152/2020/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제70호 시행령(제70/2023/ND-CP)을 9.18.(월) 확정·발표한 바(시행일: '23.9.18.~),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베 정부는 그간 시행령 개정을 11월말까지 완료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노동허가 관련 애로사항의 신속 해결 지시에 따라 앞당겨 개정했다고 함

※ 아래 내용은 '비공식 영문번역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세부규정 관련 정확한 내용은 베어본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

1 노동허가 발급대상인 '전문가, 기술자, 관리자, 운영책임자' 관련 인정범위 일부 완화 및 구체화,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및 명확화

구분	기존	개정
① "전문가" 인정요건 완화 (3조3항a)	■ 대학 전공이 노동허가 신청 직무와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지역에 따라 전공과 직무 분야 불일치 미허용)	■ 대학 전공과 노동허가 신청 직무가 일치하지 않아도 됨을 규정
② "운영책임자"의 정의 구체화 (3조5항)	■ 운영책임자를 "기관·조직·기업의 직속 단위의 장이고 이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정의 (→ 실제 기업대표 등만 운영책임자로 인정하는 등 매우 협소하게 적용)	■ 운영책임자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 (→ 기업대표 외에 일정수준의 관리자도 운영책임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운영책임자를 "기업의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의 장" 또는 "기업/기관/단체의 최소 한 분야를 직접 총괄하고 운영하며 해당 기업/기관/단체의 장의 직접적인 지도·관리를 받는 자"로 규정
③ "전문가, 기술자, 운영책임자, 관리자"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제시 (9조4항a호, b호)	■ '전문가, 기술자' 증빙서류를 '학위증, 자격증, 경력확인서'만 규정 (→ 지역에 따라 규정된 서류 외 미인정) ■ '관리자, 운영책임자'를 증빙하는 서류에 대해 구체적 규정 없음 (→ 지방성시별로 요구서류 제각각, 실제 노동허가 발급받기 매우 어려움)	■ 증빙서류로 학위증 외 인증서류(예: 졸업증명서)도 폭넓게 인정, 기 발급받은 노동허가증 또는 노동허가 면제 승인서도 근무경력 증빙서류로 활용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 * 즉, 베트남 내 근무경력도 인정한다는 의미 ■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 기관·조직·기업의 내규 또는 활동 규정 / 사업장 등록증 또는 설립증명서 또는 설립에 관한 결정문 등 / 기관·조직·기업의 임명에 관한 결정 서류

➡ 기존에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요건이 구체화(특히, 운영책임자, 관리자) 되었고, '요건 충족 증명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명확히 제시된 바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전문가 외 운영책임자 등으로 노동허가 신청)

※ 전문가 노동허가 요건(근무경력 3년 이상)은 변동이 없는 바, 근무경력 요건 미충족 시 운영책임자로 신청하는 방안 최대한 활용 필요(운영책임자 관련 규정이 구체화됨)

➡ 코로나19 기간 중 일부 완화되었던 노동허가 요건*(제105호 결의문, 2023.1. 효력만료)을 최근 다시 원상복귀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동 내용이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됨→ 대학 전공과 직무 분야 불일치 허용, 베트남 내 근무경력 인정 등 문제 해소

* ① 대학 전공과 노동허가 신청 직무 분야 불일치 허용,
② 한국에서의 근무경력뿐 아니라 베트남 내 근무경력도 근무경력으로 인정 (2021.9. 제정한 정부 제105호 결의문에 포함, 2023.1.1. 동 결의문 효력 종료)

2 외국인 사용수요 승인 관련 일부 절차 완화 및 명확화, 반면 승인신청 전 베트남인 채용공고 필수 절차 추가

구분	기존	개정
④ 외국인 사용수요 승인 신청 관련 (4조1항, 2항)	■ 법령 상 13개 범주에 해당시 사용수요 승인 신청 의무 면제	■ 사용수요 승인 면제 대상 6개 추가 (변호사, 베트남과 결혼하고 베트남에 거주하는 배우자, 국제조약에 따른 경우, ODA사업 수행자, 언론인, 자원봉사자, 교육훈련부로부터 강의·연구를 하도록 입국을 승인받은 자)
	■ 외국인 사용 최소 30일 전 신청 필요	■ 외국인 사용 최소 15일 전 신청 필요
	■ 외국인 사용수요 변동 시 신고 필요	■ 신고가 필요한 사유(직위/업무형태/인원/장소 등 변경 시 신고)를 명확히 규정
	■ (신설: 제4조제2항)	■ 2024.1.1.부터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고용서비스센터 포탈에 외국인 채용 예정 직위에 베트남인 채용 공고를 해야하며(외국인 사용 수요 승인 신청 최소 15일 이내), 사용자는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인 미채용시 사용수요 승인 신청 가능

3 일부 대상자(일부 교육기관의 관리자, 임원 등)에 대해 절차 간소화, 일부 대상자(베트남인의 배우자)는 절차 추가

구분	기존	개정
⑤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근로자 명확화·확대 (7조6항, 14항)	■ '베트남에 있는 외국외교공관 또는 국제연합의 관리 하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강의·연구하도록 권한있는 외국 기관이 베트남에 보낸 자(7조6항)', '강의·연구를 하도록 교육훈련부로부터 베트남 입국을 승인받은 외국인근로자(7조14항)'는 노동허가 면제 대상임	■ 관련 면제 대상자 범위 확대 및 명확화 * "외국의 관할기관에 의해 베트남으로 외국 외교대표기관 또는 정부간 단체/ 기구가 베트남에서 설립할 것을 요청하는 교육시설 및 베트남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 내 강사 또는 관리자·운영책임자로 파견된 자(7조6항)", "다음의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훈련부로부터 베트남 입국을 승인받은 자: a) 강의·연구, b) 외국 외교대표기관 또는 정부간 단체 / 기구가 베트남에서 설립할 것을 요청하는 교육시설의 관리자, 운영책임자, 교장(총장), 교감(부총장)"를 노동허가 면제 대상자로 규정.
⑥ 노동허가 재발급 사유 추가(12조3항)	■ 회사명 변경 시 노동허가 신규 신청 또는 재발급 여부 불명확	■ 기업코드 변경 없이 단순 회사명칭만 변경된 경우 노동허가 재발급 사유에 추가(재발급이 신규신청보다 신청절차, 서류 등에서 유리)
⑦ 베트남인의 배우자인 외국인 (8조2항)	■ 베트남인의 배우자는 노동허가 또는 노동허가 면제 승인 없이 단순히 근로자 정보만 보고하고 고용 가능	■ 베트남인의 배우자도 노동허가 면제 승인 대상자임을 승인받아야 함

④ 제출서류 간소화 및 완화

구분	기존	개정
⑧ 동일 직무/직위에서 3번째 노동허가 신청시 서류 간소화(9조9항c호)	■ (신설: 제9조제9항제c호)	■ 노동허가 최초 발급→ 노동허가 1회 연장→ 다시 노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 범죄경력증명서, ▲ 관리자/운영책임자/전문가/기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면제
⑨ 노동허가 재발급 신청서류 간소화 (13조4항)	■ 제출서류에 '외국인근로자 사용수요 승인서'도 포함	■ '외국인근로자 사용수요 승인서' 제출 제외
⑩ 제출서류 공증/인증 관련 기준 완화	■ 8조3항e호, 9조10항, 23조4항	■ 기존에 '베트남으로 번역하고 영사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제출서류 상당수를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공증하거나 영사확인"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완화
	■ 여권 사본의 경우 공증 후 제출 (8조3항d호, 9조7항, 17조5항)	■ 공증 받은 여권 사본 외에 사업주의 확인이 있는 여권 사본도 허용

⑤ 근로자가 여러 성·시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 중앙부처에서 관할, 노동보훈사회부(국)에 온라인 보고 의무 규정

구분	기존	개정
⑤ 여러 성·시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6조3항, 30조1항a, 9조1항)	■ (신설: 제6조제3항)	■ 외국인근로자가 여러 성·시에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 3근무일 내 사용자는 노동보훈사회부 및 해당 노동보훈사회국에 보고해야함(온라인)
	■ (추가: 30조1항a호)	■ 여러 성시에 사무소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 노동허가 관할기관이 지방 성시가 아닌 중앙부처(노동보훈사회부)로 변경 * 기존에는 여러 상시에 사무소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 해당 성시에서 각각 노동허가를 발급함 * 노동허가 신청서에 근무 예정인 복수의 장소 모두 기재

⑥ 기타: 중앙정부, 중앙-지방간 관할범위 조정

* ▲ 지방 성시의 관할기관을 기존의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에서 '노동보훈사회국'으로 구체화(기존에도 인민위원회 내 노동보훈사회국에서 담당) ▲ 경제 및 산업단지 관리당국의 노동허가 업무를 노동보훈사회부(국)으로 이전 등

붙임	노동허가 개정 시행령(제70/2023/ND-CP호) 2023년 9월 18일 개정·시행
◇ 베 정부는 기존의 노동허가 시행령(제152/2020/ND-CP호)의 일부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새로운 노동허가 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고, 202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함 ※ 비공식번역본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베어본과 비교하여 활용 필요	

정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 70/2023/ND-CP
하노이, 2023년 9월 18일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베트남 내 외국조직 및 외국인 개인을 위하여 근무하는 베트남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2020년 12월 30일 자 정부 제152/2020/ND-CP호 시행령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시행령

2015년 6월 19일 자 정부조직법; 2019년 11월 22일 자 정부조직법 및 지방정부 조직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2019년 11월 20일 자 노동법에 근거하여;

2020년 6월 20일 자 투자법에 근거하여;

2020년 6월 20일 자 기업법에 근거하여;

노동보훈사회부장관의 제안에 따라;

정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베트남 내 외국조직 및 외국인 개인을 위하여 근무하는 베트남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정부의 2020년 12월 30일 자 제152/2020/ND-CP호 시행령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을 공포한다.

제1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베트남 내 외국조직 및 외국인 개인을 위해 근무하는 베트남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정부의 2020년 12월 30일 자 제152/2020/ND-CP호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 보완한다.

1. 제3조의 일부 조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 보완한다.

a) 제3조 제3항 a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 보완한다.

"a) 대학 이상 또는 동등한 학위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위와 적합한 최소 3년의 근무경력을 보유할 것."

b) 제3조 제5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 보완한다.

"5. 운영책임자는 다음의 각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a) 기업의 지사, 대표사무소 혹은 사업장의 장인 자

b) 기관, 조직, 기업의 분야 중 최소 한 분야를 직접 총괄하고 운영하며 해당 기관, 조직, 기업의 장의 직접적인 지도와 운영을 받는 자."

c) 제3조 제6항 a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 보완한다.

"a) 최소 1년의 훈련을 받는 것과 함께 외국인근로자가 베트남에서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위에 적합한 최소 3년의 근무경력을 보유할 것."

2. 제4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 보완한다.

“제4조. 외국인근로자 사용

1. 외국인근로자 사용수요 확정

- a) 고용주(도급업자 제외)는 외국인근로자 사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베트남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직위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사용 수요를 확정하고 본 시행령에 첨부되어 발행된 부록 I 서식1에 따라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예정인 곳이 소재한 지방성 노동보훈사회국에 설명·보고할 책임이 있다.

시행과정에서 직위, 직책, 근무방식, 인원, 장소와 관련된 외국인근로자 사용수요가 변경되는 경우 고용주는 외국인근로자 사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본 시행령에 첨부되어 발행된 부록 I 서식2에 따라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노동보훈사회국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 b) 노동법 제154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및 본 시행령의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과 제14항에 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사용수요를 확정할 필요가 없다.

- c) 2024년 1월 1일부터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예정인 직위에 대한 베트남근로자 채용공지가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소재한 노동보훈사회국에 설명·보고할 날로부터 최소 15일 이내 노동보훈사회부(고용국)의 포털 또는 성·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가 설립을 결정하는 취업서비스센터의 포털에 게재되어야 한다. 채용공지의 내용은 직위 및 직책, 업무 설명, 인원, 학력 및 경력에 대한 요구, 급여, 근무 시간 및 장소 등을 포함한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직위에 베트남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본 조항의 제1항 a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사용수요를 확정할 책임이 있다.

2.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성급 노동보훈사회국은 외국인근로자 사용수요 또는 변경에 대한 설명·보고를 받은 10영업일 이내에 본 시행령에 첨부되어 발행된 부록 I 서식3에 따라 각 직위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사용 승인여부의 문서를 발행한다.

3. 제6조 3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보완한다.

- “3. 외국인근로자가 여러 성·중앙직할시에서 한 고용주를 위해 근무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시작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고용주는 동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 서식17에 따라 노동보훈사회부와 근로자가 근무하는 성·시 노동보훈사회국에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한다.”.

4. 제7조 일부 조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보완한다.

a) 제7조 6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보완한다.

- “6. 외국의 관할기관에 의해 베트남으로 외국 외교대표기관 또는 정부간 단체/ 기구가 베트남에서 설립할 것을 요청하는 교육시설 및 베트남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 내 감사 또는 관리자·운영책임자로 파견된다.”.

b) 제7조 14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보완한다.

- “14. 교육훈련부에 의해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확인받는다.

- a) 강의, 연구

- b) 외국 외교대표기관 또는 정부간 단체 / 기구가 베트남에서 설립할 것을 요청하는 교육시설의 관리자, 운영책임자, 교장(총장), 교감(부총장)의 업무.”.

5. 제9조 일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보완한다.

a) 제9조 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보완한다.

- “1. 노동허가 발급 요청에 관한 고용주의 신청서는 동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 서식11에 따른다. 외국인근로자가 여러 장소에서 한 고용주를 위해 근무할 경우, 노동허가 발급 요청 신청서에는 근무장소를 충분히 나열해야 한다.”.

b) 제9조 4항 a호와 b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보완한다.

- “a) 동 시행령 제3조 4항과 5항에 규정된 관리자, 운영책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다.

- 회사 내규 또는 기관·단체·기업의 활동 규정
- 기업등록증 또는 설립증명서 또는 설립에 관한 결정문 또는 동일한 법적 가치가 있는 서류
- 기관·단체·기업의 임명에 관한 결의

- b) 동 시행령 제3조 3항과 6항에 규정된 전문가·기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다.

- 학위증 또는 자격증 또는 증명서
- 전문가·기술자의 경력 년수 확인에 관한 기관·단체·기업의 문서 또는 발급된 노동허가 또는 노동허가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문서.”.

c) 제9조 8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보완한다.

- “8. 동 시행령 제2조 1항 a호에 규정된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서류.”.

d) 제9조 8항 e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보완한다.

- “e) 동 시행령 제2조 1항 i호에 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동 시행령 제3조 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베트남으로 예정 업무에 적합하게 파견한다는 외국 기관·단체·기업의 문서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d) 제9조 9항 c호를 아래와 같이 보완한다.

- “c) 노동허가를 발급받고 한 번 연장한 후, 노동허가에 기재되어 있는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요가 있는 전문가·기술자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새로운 노동허가 발급을 요청하는 서류는 동 조 제1, 2, 5, 6, 7, 8항에 규정된 서류와 발급받은 노동허가 사본을 포함한다.”.

6. 제11조 2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보완한다.

- “2.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예정인 곳이 소재한 노동보훈사회국은 노동허가 발급 요청 서류를 충분히 접수받는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동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I 서식1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허가를 발급한다. 노동허가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회신 문서가 있어야 한다.

노동허가증은 사이즈가 A4(21cm * 29,7cm)이며 1페이지가 파란색, 2페이지지가 흰색에 파란문의, 가운데에 별이 있는 것이다. 노동허가증은 동 시행령 부록 I 서식16에 따라 성·중앙직할시 코드와 노동보훈사회부 코드, 허가증 발급연도의 뒤 2자리 숫자, 허가증의 종류(신규발급 코드: 1, 갱신발급 코드: 2, 재발급 코드: 3), 연번(000.001부터 시작) 등으로 코드화된다.

노동허가증은 전자판인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본 시행령의 부록 I 서식12에 따른 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7. 제12조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 보완한다.

“3. 유효기간이 남은 노동허가증에 기재된 성명, 국적, 여권번호, 근무장소 및 기업코드 변경 없이 기업 명칭 등 내용 중 하나의 변경.”.

8. 제17조 제7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 보완한다.

“본 시행령의 제2조 제1항 a호에 규정된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기발급된 노동허가증의 내용에 따라 고용주와 계속 근무할 것임을 증명하는 본 시행령의 제9조 제8항에 규정된 서류 중 하나.”.

9. 제22조 제1항 b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 보완한다.

“b) 지방성 인민위원회로부터 분권화, 위임, 임무 부여, 주문 또는 입찰을 받는 조직.”.

10. 제27조 제4항 b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 보완한다.

“b) 지방성 인민위원회로부터 분권화, 위임, 임무부여, 주문 또는 입찰을 받아 외국의 조직, 외국인 개인을 위해 근무하는 베트남근로자의 채용, 관리를 하는 조직은 노동보훈사회국에 보고한다.”.

11. 제30조의 일부 조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 보완한다.

a) 제30조 1항 a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 보완한다.

“a) 외국인근로자 사용수요의 승인 및 노동허가서 면제대상 확인을 수행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 재발급, 갱신, 회수를 수행한다.

- 제2조 2항 g호에 규정된 고용주와 정부, 총리, 각 부처 및 하위 조직에 의해 설립이 허락된, 제2조 2항 c, d, e호에 규정된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 여러 개의 지방성에서 하나의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b) 제30조 제1항 c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 보완한다.

“c) 중앙부터 지방까지 베트남 내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및 관리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베트남 내 외국의 조직, 외국인 개인을 위해 근무하는 베트남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통일되게 수행한다.”.

c) 제30조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 보완한다.

“3. 국방부의 책임

- a) 베트남 내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조직 및 외국인 개인을 위해 근무하는 베트남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관할하는 기관과 협조하여 전략지역, 핵심지역, 국방 요충지의 안보와 치안 보장에 관한 법령을 이행한다.
- b) 조국의 영유권, 안보, 국경지역 수호를 위해 국경경비대가 관할당국과 협조하여 베트남 내 외국조직 및 외국인 개인을 위해 근무하는 베트남근로자와 국경지역, 검문소, 도서, 수역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검사를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d) 제30조 제4항 a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 보완한다.

“a) 매월 노동보훈사회부에 기관, 조직, 기업에서 근무하기 위해 DN1, DN2, LV1, LV2, LD1, LD2, DT1, DT2, DT3, DT4와 같은 기호의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d) 제30조 제6항 a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 보완한다.

“a) 외국인근로자 사용수요의 승인 및 노동허가서 면제대상 확인을 수행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 재발급, 갱신, 회수를 수행한다.

- 제2조 2항 a호, b호, h호, i호, k호, l호에 규정된 고용주와 성급 인민위원회, 성급 인민위원회 직속 전문기관, 현급 인민위원회에 의해 설립이 허락된, 제2조 2항 c호, d호, e호에 규정된 기관, 조직을 위해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 동일한 성·중앙직할시에 소재한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12. 일부 서식을 아래와 같이 개정, 보완한다.

a) 제152/2020/ND-CP호 시행령에 첨부되어 발행된 부록 I 서식1, 서식2, 서식7, 서식8을 본 시행령에 첨부되어 발행된 부록 I 서식1, 서식2, 서식7, 서식8로 개정한다.

b) 제152/2020/ND-CP호 시행령에 첨부되어 발행된 부록 I에 서식16 및 서식17을 보충한다.

13. 아래와 같은 항목, 조항, 부록에 일부 단어 및 문구로 대체, 보충한다.

a) 제5조 제1항에 있는 “성급 인민위원장”을 “노동보훈사회국”으로 대체한다. 제5조 제2항에 있는 “성급 인민위원장이 지도한다”란 문구를 “노동보훈사회국이 요청한다”란 문구로 대체한다.

b) 제8조 제2항에 있는 “제154조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을 “제154조 제4항 및 제6항”으로, “3일”을 “3영업일”로 대체한다.

c) 제8조 제3항 e호에 있는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영사확인을 받는다”란 문구를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공증하거나 영사확인을 받는다”란 문구로 대체한다.

d) 제9조 제10항 및 제23조 제4항에 있는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영사확인을 받는다”란 문구를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공증하거나 영사확인을 받는다”란 문구로 대체한다.

d) 제13조 제5항에 있는 “본 조항의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서류”란 문구를 “본 조항의 제3항에 규정된 서류”란 문구로 대체한다.

e) 제13조 제5항 및 제17조 제8항에 있는 “베트남어로 번역”이란 문구를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공증하거나 영사확인을 받는다”는 문구로 대체한다.

g) 제8조 제3항 d호, 제9조 제7항 및 제17조 제5항에 있는 “여권의 공증을 받은 사본”이란 문구를 “여권의 공증을 받은 사본 또는 고용주의 확인이 있는 여권사본”이라는 문구로 대체한다.

h) 제152/2020/ND-CP호 시행령에 첨부되어 발행된 부록 I 서식11에 있는 “20. 급여 : ...동”을 “20. 월 평균 급여 : ...백만동”으로 대체한다.

i) 제152/2020/ND-CP호 시행령에 첨부되어 발행된 부록 I 서식3에 있는 “...성/시 인민위원회”란 문구를 “... 노동보훈사회국”이란 문구로 대체한다.

k) 제152/2020/ND-CP호 시행령에 첨부되어 발행된 부록 I 서식3에 있는 “국장/성급 인민위원장”이란 문구를 “국장/국장”이란 문구로, “...호 공문을 통한 요청에 따라”란 문구를 “...호 공문을 통한 요청과 제공된 정보에 따라”란 문구로 대체한다.

l) 제152/2020/ND-CP호 시행령에 첨부되어 발행된 부록 I 서식4, 서식5, 서식6에 있는 “...성/

시 인민위원장”이란 문구를 “... 노동보훈사회국”이란 문구로 대체한다.

※ 부록 개정내용: 생략(베어본 참조)

- m) 제152/2020/ND-CP호 시행령에 첨부되어 발행된 부록 I 서식6에 있는 “성/시 인민위원회/위원장 대표”란 문구를 “국장”으로 대체한다.
- n) 제152/2020/ND-CP호 시행령에 첨부되어 발행된 부록 I 서식9의 24호 뒤에 “(기업/조직은)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약속합니다. 잘못된 경우 (기업/단체)는 법 앞에 모든 책임을 집니다”란 문구를 보충한다.
- o) 제152/2020/ND-CP호 시행령에 첨부되어 발행된 부록 I 서식13에 있는 “수신처”에 “출입국관리국(공안부)”란 문구를 보충한다.

14. 아래와 같은 일부 조항을 폐지한다.

- a) 제13조 제4항을 폐지한다.
- b) 제30조 제5항 c호, d호, d호 및 제6항 g호를 폐지한다.
- c)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 관리에 관한 정부의 2022년 5월 28일자 제35/2022/ND-CP호 시행령으로 개정, 보완된, 베트남 내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조직·외국인개인을 위해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정부의 2020년 12월 30일자 제152/2020/ND-CP호 시행령의 제30조 제6a항 a호를 폐지한다.

제2조.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 관리에 관한 정부의 2022년 5월 28일 자 제35/2022/ND-CP호 시행령의 일부 규정을 폐지한다.

- 1. 제68조 제2항 d호에 있는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 내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노동허가증 발급, 재발급, 갱신, 회수 및 노동허가증 면제대상 해당 외국인근로자 확인을 수행한다”는 첫 문구와 “외국인근로자 사용현황 보고서 접수”란 문구를 폐지한다.
- 2. 제68조 제3항 c호에 있는 “베트남 근로자가 충족할 수 없는 직위별 외국인근로자 사용수요에 대한 산업단지·경제특구 입주 기업의 설명보고서를 접수한다”는 문구를 폐지한다.

제3조. 이행조항

- 1. 본 시행령은 2023년 9월 18일로부터 시행효력이 발생한다.
- 2. 경과조항

본 시행령의 효력일 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주가 노동보훈사회부, 성급 인민위원회, 노동보훈사회국, 산업단지·경제특구·첨단산업단지 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외국인근로자 사용수요 설명보고서, 노동허가증 면제대상 해당 확인 신청서류, 노동허가증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서류의 경우 베트남 내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조직·외국인개인을 위해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정부의 2020년 12월 30일자 제152/2020/ND-CP호 시행령과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 관리에 관한 정부의 2022년 5월 28일자 제35/2022/ND-CP호 시행령을 준수한다.

정부 대표
총리 대리 서명
부총리
쩐 홍 하